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61,416,014	7,842,480
일반회계	196,281,357	5,888,441
일반회계	196,281,357	5,888,441
기타특별회계	65,134,657	1,954,0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88,965	137,66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3,894	14,517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64,729	25,94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5,846,776	775,4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988,594	269,65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891,265	356,738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975,000	59,2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9,923,234	297,697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502,000	15,060
기반시설특별회계	70,200	2,106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49,02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 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